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 기준

장애유형		필기(사지선다)형 시험	제출서류
시각장애	1급~6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시간 1.7배 연장 ▪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▪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①,②,③호중 하나
뇌병변장애	등급 구분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시간 1.5배 연장 ▪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▪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▪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①,②,③호중 하나
지체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시간 1.5배 연장 ▪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▪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▪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①,②,③호중 하나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▪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①,②,③호중 하나
	④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지장애와 동일 	①,②,③호중 하나
청각장애	등급 구분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▪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▪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①,②,③호중 하나
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	④호
기타	임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▪ 좌석간격 조정 	의사 소견서

*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등급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증빙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)
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, 소견서 불인정)

* 확대 문제지 : A3 규격의 150%(18point)로 확대된 1종류

* 확대 답안지 : A3 규격의 기입형 1종류